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30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의자 : 박상혁 · 박군택 · 김우영  
한창민 · 강득구 · 서미화  
김한규 · 최혁진 · 정준호  
박수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 · 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2024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계획 대비 국유재산의 과다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u></p> <p><u>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u> <u>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u> <u>과 처분 사유를 국회 소관 상</u> <u>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u> <u>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p>